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2.

특 허 청  
(특허심사제도과)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되어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종류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이 전환(2022. 1. 1. 예정)되는 등 특허와 관련된 대내외 법령 및 제도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정합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유효한 전자서명 확대(안 제5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6)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의 종류를 기존의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서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서열목록 제출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1조,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서식 제15호, 제35호)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서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게 하는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된 서열목록에 대해 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 대체 가능 사실 명시(안 별지서식 제4호, 제5호, 제14호, 제30호의2, 제30호의3, 제33호의2)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서식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식에 병기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라. 국어번역문을 미제출한 외국어출원에 대한 보정서 반려(안 제11조)

외국어출원에 대해 국어번역문이 제출되기 전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정하려는 보정서를 반려해야 하나 서류 반려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마. 행정정보의 신속한 안내를 위해 제출받는 연락정보 정비(안 별지서식 제4호)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주소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출받는 필수적인 연락정보로 변경함.

바. 특허증 별지 서식 내용의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26호, 제26호의2,

제26호의9, 제28호, 제28호의2부터 제28호의9)

특허증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정확한 문구로 변경하여 명확화하는 한편, 휴대용 특허증에 “휴대용” 명칭을 표시하여 구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제1호 중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4제1항 본문 중 “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6 중 “제9조의3”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법 제52조제1항”을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제3항제2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7. 서열목록(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본문 중 “명세서에 적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을 “수록”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인 경우로서 해당 서열목록을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려면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하지 않고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의5제4호 중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서열목록전자파일”로 한다.

제106조의1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표준”을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의13을 삭제한다.

제106조의38 중 “제106조의12 및 제106조의13”을 “제106조의12”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7호가목(1)(나) 중 “가족관계증명서(성명을 개명한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성명을 개명한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제7호나목(3)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3호다목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를 “(【서열목록】)”으로 하고, “(【서열목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아목(1) 중 “【기술분야】부터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를 “【기술분야】부터 【서열목록】”으로 하고,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를 “(【서열목록】)”으로 하며, “(【서열목록】)”을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 중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를 “(【서열목록】)”으로 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수탁번호】) 및 (【서열목록 자유텍스트】)”를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수탁번호】)”로 하며,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 (10) 【서열목록】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면 기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인 경우에는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9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나목(3) 중 “인감증명서”를 “인

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33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제출구분】란 중 “□ 서열목록보정”을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가목(5) 중 “서열목록 등 또는 서열목록보정”을 “서열목록 등”으로 한다.

제출구분	내 용	관련 규정
국제조사용번역문	국제 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4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서류원본	팩스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자가 그 원본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국제 출원에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되어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제3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도면	국제 출원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그 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제 출원에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되어 그 누락된 도면 또는 정정하는 도면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제99조의2제3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선출원번역문	심사관이 제출을 요구한 선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06조의35제2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서열목록 등	표준에 맞는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출명령을 받고 이를 제출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06조의38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4항,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2022년 1월 1일 전인 국제출원 또는 원출원의 출원일이 2022년 1월 1일 전인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제21조제3항·제4항,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

(앞쪽)

**【제출인】**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제출인 구분】**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 **【전자우편주소】** )

( **【휴대전화번호】** )

**【제출인 인감(서명)】**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5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가. 이 서식은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특허청에 등록하고 특허청 고유번호인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2,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상표법」 제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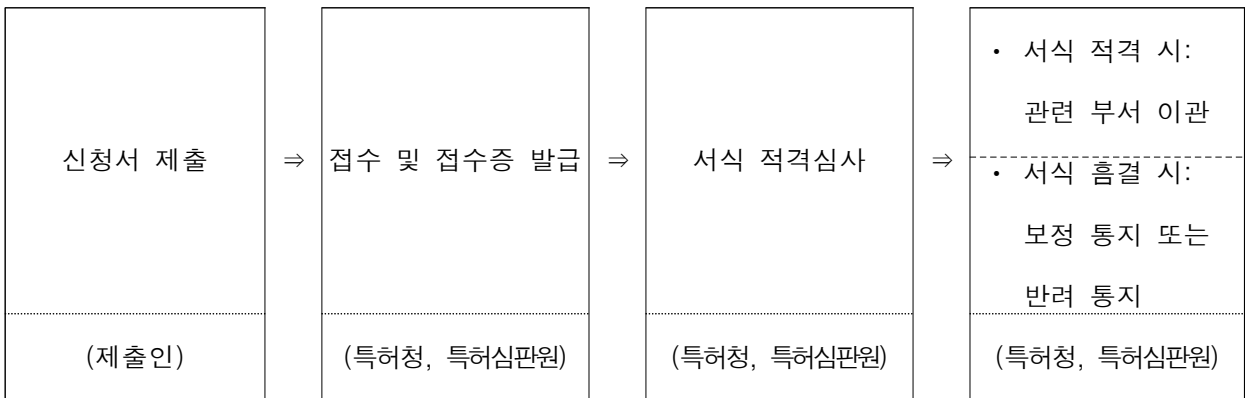
나. 한편,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8조의4,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31조 및 「상표법」 제31조).

다.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이 서식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

라. 특허청은 본 신청서에 적힌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발명·고안 등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1조, 「실용신안법」 제1조, 「디자인보호법」 제1조, 「상표법」 제1조).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릅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1)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란에 성과 이름 순서로 공백 없이 적으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쉽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명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국문표기】 및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2) 제출인이 외국인(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1과 같이 【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성명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두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 2와 같이 【명칭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명칭의 영문표기 전체를 국어로 음역하여 적고 【명칭의 영문표기】란은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예 1] 외국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예 2] 제출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명칭의 국문표기】 에이에스디 코퍼레이션

【명칭의 영문표기】 ASD corporation

#### 나. 【제출인 구분】

“국내 자연인”, “외국 자연인”, “국내 법인”, “외국 법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 다. 【주민등록번호】

제출인 구분에 따라 다음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한편, 이 난을 삭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제출인이 국내 주소가 있고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추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립·공립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내역,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마. 【우편번호】 및 【주소】

1)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외국주소인 경우에는 【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란에 적고, 다음 행에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2) 【주소】란에 적은 주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주소】란의 다음 행에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송달장소의 주소】란을 만들어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송달장소의 주소는 국내 주소만 적을 수 있으며, 【주소】란의 주소와 송달장소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송달장소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건물번호

3)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행에 【국적】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어야 합니다.

바. 【전자우편주소】

출원인제출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주소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내역,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출원인의 동의(전자문서 이용 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습니다)를 받아 마감기한에 대한 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 【휴대전화번호】

출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마감기한, 방식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내역, 공시송달사항 및 서류 제출결과 등에 대한 통지, 만족도 조사 및 정책안내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출원인의 동의(전

자문서 이용 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시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음)를 받아 마감 기한에 대한 통지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사. 【제출인 인감(서명)】**

- 1) 인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 란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고, 서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서명】 란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서명 날인란을 만들어 선명하게 서명합니다. 인감과 서명을 같이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 및 서명】 란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 및 서명 날인란을 각각 만들어 선명하게 날인 및 서명합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 인감(서명)】 란을 삭제합니다.
- 2)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서명)】 란을 만들어 【제출인 인감(서명)】 란과 같은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며,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란에 【특허고객번호】 를 적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3) 【제출인 인감(서명)】 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컬러 이미지로서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 【제출인】 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 1)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 란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 를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 2) 제출인이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합니다)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으며, 「디자인보호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하 “디자인의 국제출원”이라 합니다)의 출원인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란**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이 계류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출원건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출원건이 없거나 계류 중인 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1999. 1. 1. 전 출원건의 출원번호】 10-1998-1234567

**3. 【대리인】 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어 이를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4. 【그 밖의 사항】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과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를 자동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안에 표시(예: )합니다. 그 밖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또는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십시오.

[예]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인 구분에 따른 다음 항목의 증명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참조)

가) 국내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중 1통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 1통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라)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1통

※ 외국 법인 중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증명(또는 고유번호증)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국가기관인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중 1통

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기재요령 제1호 및 제3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로 한정합니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 서식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특허권자 Patentee

발명자 Inventor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 Act,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 인

서 명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 CERTIFICATE OF PATENT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itle of the Invention

Patentee

Inven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 Act,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 شهادة حقوق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براءة الاختراع

رقم الطلب

تاريخ المأ

تاريخ التسجيل

عنوان الاختراع

صاحب الاختراع

المخترع

هذا للشهادة بأن براءة الاختراع مسجلة لدى مكتب سجل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مكتب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رئيس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 휴대용 특허증

PORTABLE CERTIFICATE OF PA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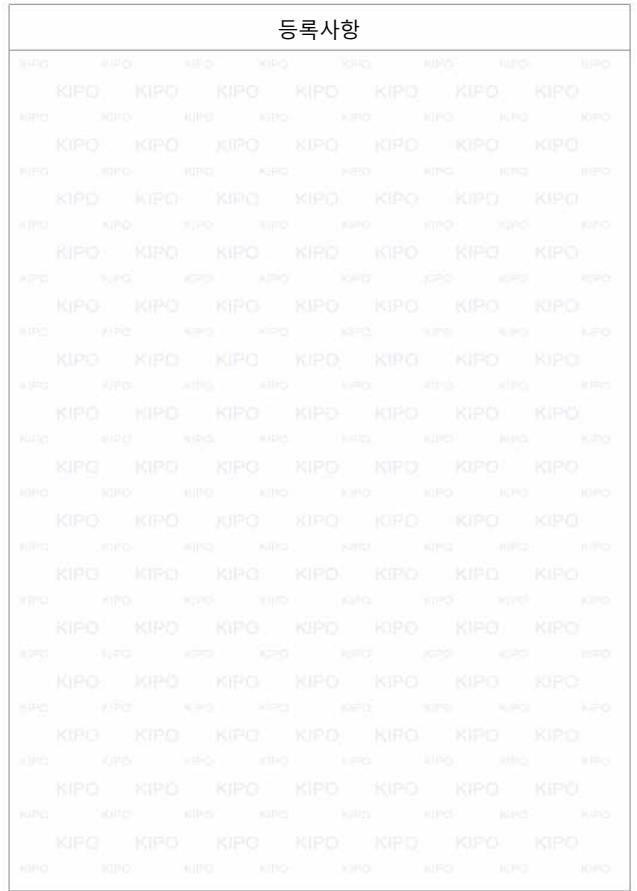
**등 록 제 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 제 호**  
 Application Number  
**출원일 년 월 일**  
 Filing Date  
**등록일 년 월 일**  
 Registration Date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특허권자 Patentee  
  
 발명자 Inventor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 Act,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년 월 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직인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PORTABLE CERTIFICATE OF PATENT**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Number  
 Filing Date  
 Registration Date

Title of the Invention

Paten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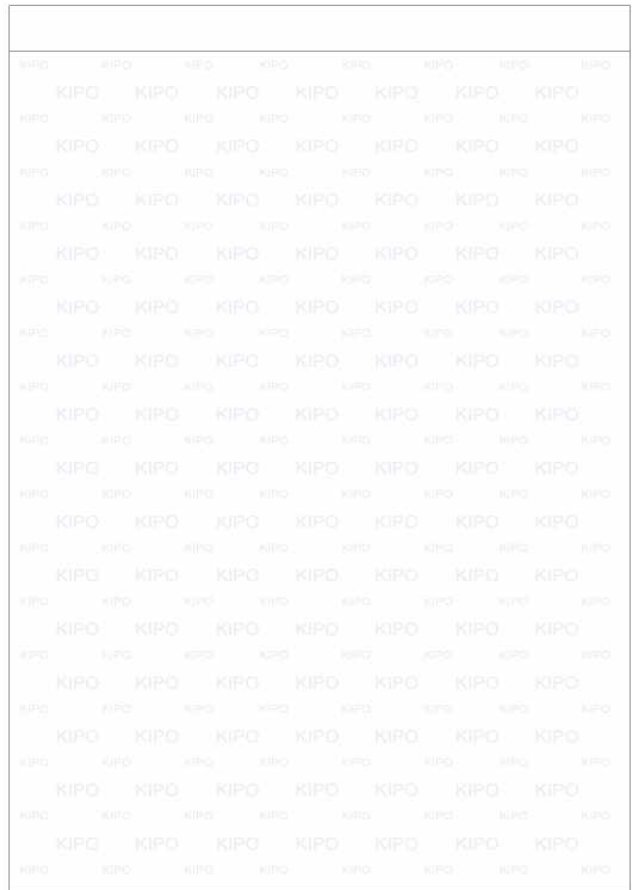
Inventor

**This is to certif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atent Act, a patent for the invention has been registered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서명

인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 携帯用特許証

特許 第 号

出願番号  
出願日  
登録日

発明の名称

特許権者

発明者

上の発明は「特許法」によって特許登録原簿に登録されたことを証明します。

特許庁長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 Patenturkunde im transportierbaren Format

**Patentnummer**

Antragsnummer  
Antragsdatum  
Registrationsdatum

Bezeichnung der Erfindung

Bezeichnung der Erfind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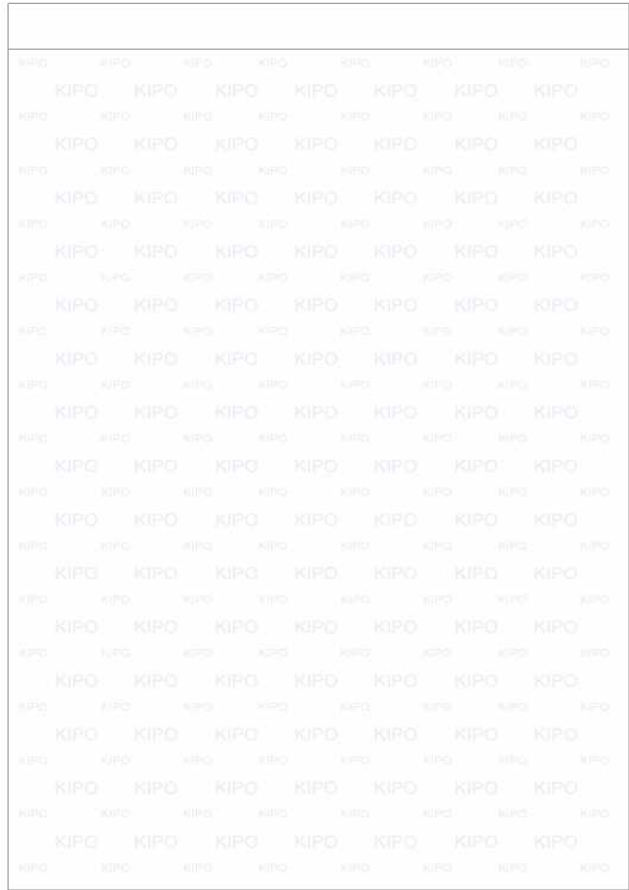
Erfinder

Hiermit wird bescheinigt, dass gemäß des [Patentgesetzes] das Patent auf das Register des koreanischen Amt für geistiges Eigentum eingetragen ist.

**Patentamt, Korea**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취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 Certificat de brevet portable

**Numéro matricule**

Numéro d'application  
Date d'application  
Date d'inscription

Dénomination d'invention

Propriétaire du droit de brev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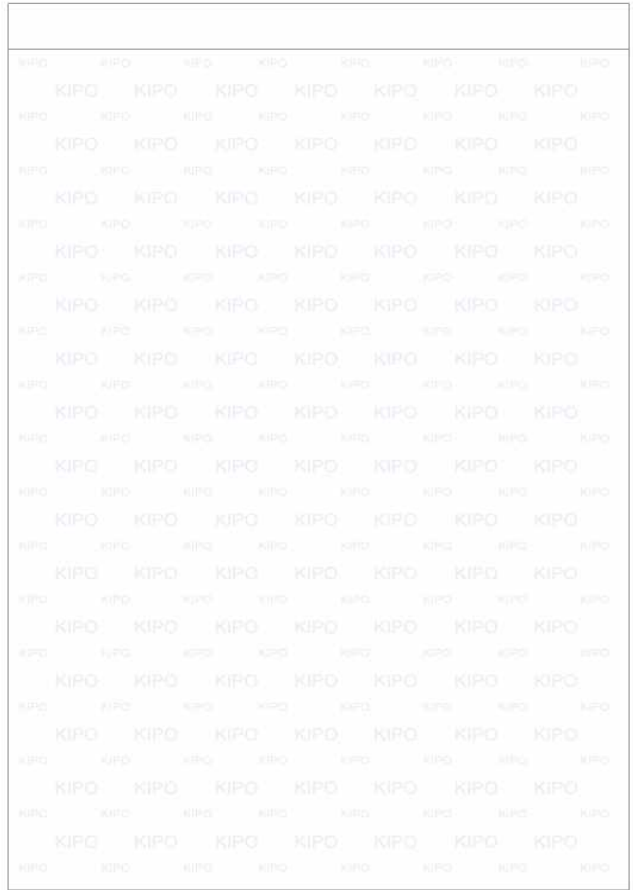
Inventeur

**Certifie, selon la loi relative au brevetage et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que le brevet ci-dessus est inscrit dans le registre du bureau de la propriétaire intellectuelle de la Corée.**

Directeur général de l'Office corée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 ПЕРЕНОСНОЕ ПАТЕНТ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 Номер патента

Номер заявки  
Дат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Дата регистрации

Название изобретения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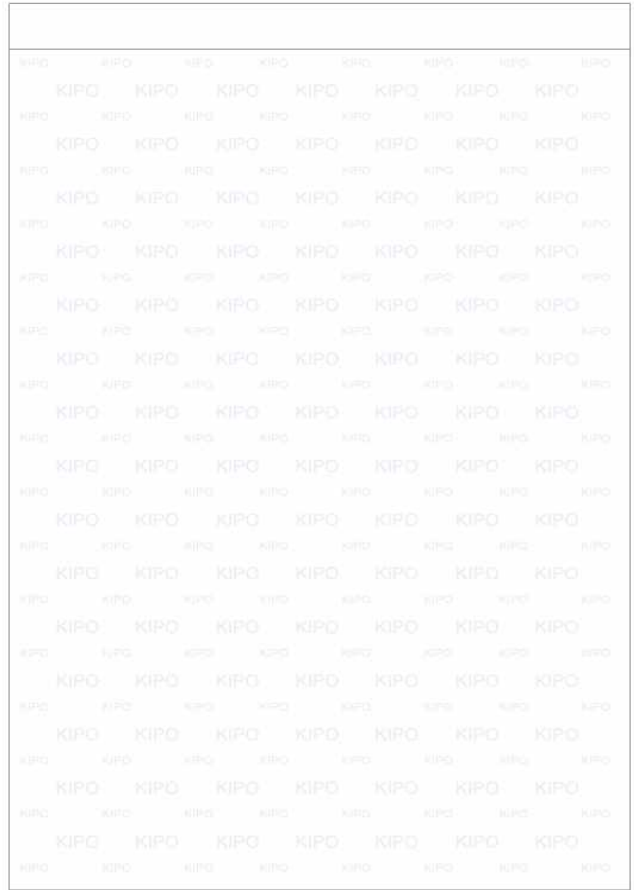
Разработчик

Настоящим подтверждаю,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ое изобретение за  
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Патентном Реестре согласно положений Зака  
она о патентах.

Начальник Патентного Бюро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CERTIFICADO DE PATENTE PORTÁTIL**

**N° de patente**

N° de solicitud  
 Fecha de solicitud  
 N° de registraci3n

Título de la invenci3n

Titular de la pate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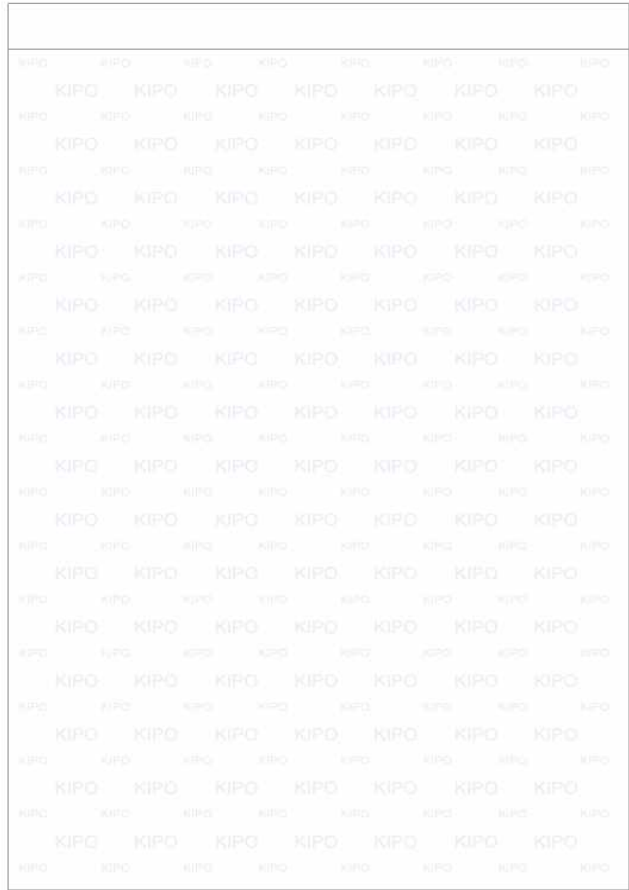
Inventor

**Se certifica que la patente arriba mencionada ha sido registrada de acuerdo a la Ley de Patentes en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Director de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권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便携式发明专利证书

发明专利 第 号  
 申请号 第 号  
 申请日期 年 月 日  
 登记日期 年 月 日

发明名称

发明专利权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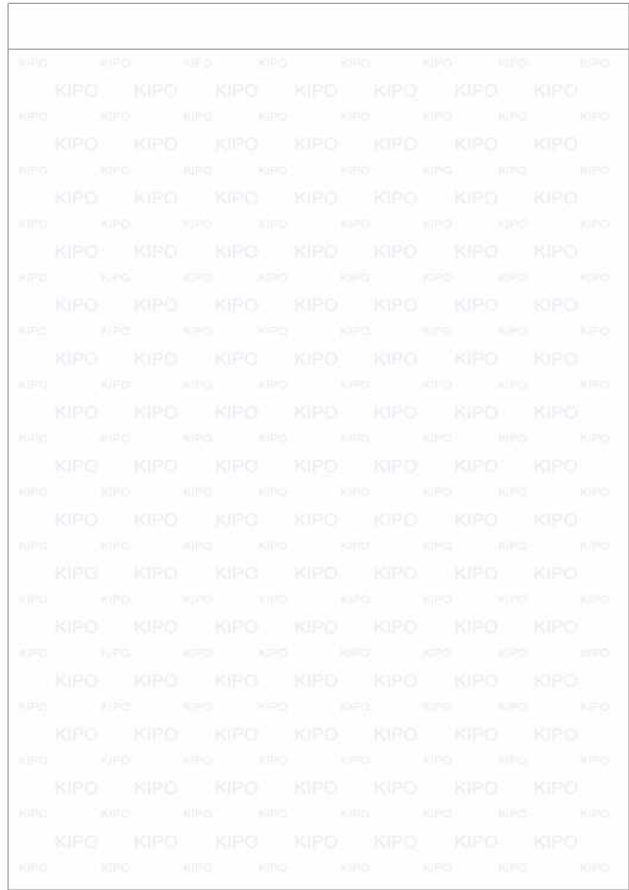
发明人

兹证明上述发明依照《发明专利法》已在发明专利  
 登记原簿上予以注册。

韩国特许厅长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شهادة حقوق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المحمولة

رقم براءة الاختراع

رقم الطلب

تاريخ الميلاد

تاريخ التسجيل

عنوان الاختراع

صاحب الاخترا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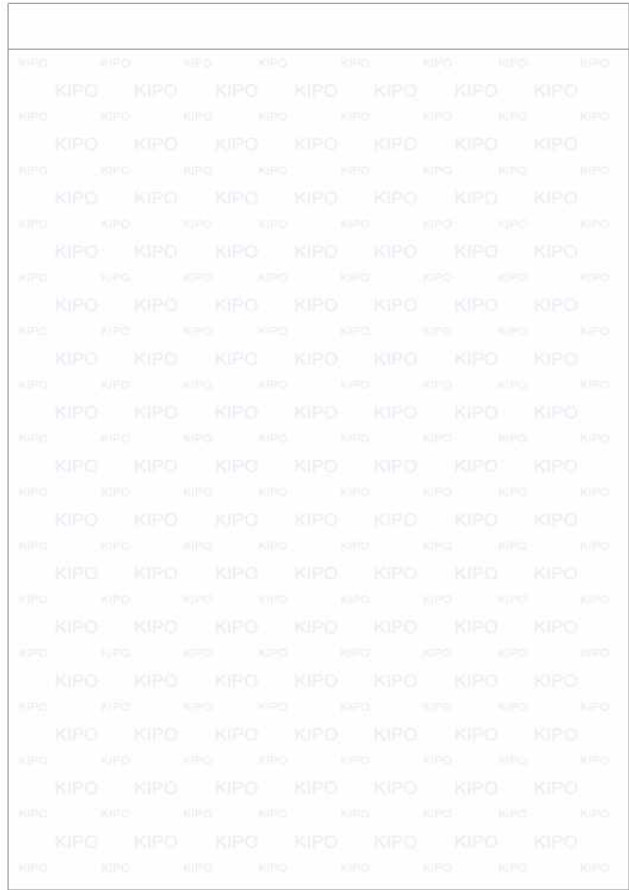
المخترع

هذا للشهادة بأن براءة الاختراع مسجلة لدى مكتب سجل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رئيس مكتب حقوق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كوري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서명



210mm×148mm(보존용지(1종) 120g/㎡)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포괄위임)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p> <p>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u>제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u></p> <p>2. (생략)</p> <p>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p>	<p>제5조의2(포괄위임)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 ----- ----- ----- -----.</p> <p>1. ----- -----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 ----- -----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 ----- ----- ----- -----.</p>

은 특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9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특허협력조약 시행세칙」(이하 “조약시행세칙”이라 한다) 703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제90조·제92조의3·제132조의4·제140

-----  
-----.

<삭 제>

<삭 제>

제9조의4(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  
-----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  
-----  
-----.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  
-----  
-----

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19. (생략)

20.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1.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  
-----  
-----  
-----  
-----  
-----  
-----  
-----  
-----  
-----  
-----  
-----

1. ~ 19. (현행과 같음)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

2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특허출원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서열목록(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략)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영 제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 3. (생략)
4.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인 경우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열목록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 형식으로 명세서에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열목록 또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5. ~ 8. (생략)  
 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

우로서 해당 서열목록을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려면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하지 않고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4조의5(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서열목록전자파일 -----  
 -----  
 -----  
 -----  
 -----  
 -----  
 -----  
 -----  
 -----

5. ~ 8.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12(핵산염기 서열목록

의 제출 등) ①심사관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약규칙 13ter.1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료 납부를 명할 수 있다.

1.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서열목록

2. 표준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적 형태의 서열목록

3. (생략)

② ~ ⑤ (생략)

제106조의13(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①명세서의 서열목록부분이 조약규칙 5.2(b)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의 제출 등) ①-----  
-----  
-----  
-----  
-----  
-----  
-----  
-----  
-----  
-----  
-----  
-----  
-----

<삭제>

2. 조약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표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이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서 3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제106조의12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보정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 등의 제출) 제106조의12 및 제106조의13의 규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등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6조의38(핵산염기 서열목록 등의 제출) 제106조의12-----  
-----  
-----  
-----  
-----.